

의안번호	제275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376 회)

**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
-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변경 (안 제1조, 제2조)
-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 삭제 (안 제3조, 제14조)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항목의 변경 및 추가 (안 제6조, 제12조 등)
- 전자민원 창구 운영 항목의 추가 (안 제8조)
- 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 (안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항목의 변경 (안 제 16조, 제18조 등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있음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”를 “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 ”홈페이지”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”를 “ ”홈페이지”란 충청북도(이하 ”도”라 한다)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전자민원“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목적이나 성향”을 “목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단체, 부서를”을 “단체 및 행정기관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 중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

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를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 중 “기타 연습성”을 “연습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
제8조제1항 중 “인터넷으로 민원을”을 “전자민원을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”를 “전자민원 창구는 전자
민원 접수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
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인터넷 민원접수)”를 “(전자민원 접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
항 중 “인터넷 대상민원”을 “전자민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터넷
민원접수”는 “전자민원 접수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에 따른다.

제18조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전자우편 ID 이용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2. 정치적 <u>목적이나 성향</u>이 있는 경우</p> <p>3. 특정기관, <u>단체, 부서를</u>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<u>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</p> <p>9. <u>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</u>의 내용 등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목적-----</p> <p>3. 단체 및 행정기관을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</u></p> <p>9. <u>연습성</u>-----</p> <p>10. <u>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① <u>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</u>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한다</p> <p>② <u>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</u> 접수 및 공개,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,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</p> <p>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9조(<u>인터넷 민원접수</u>)</p> <p>① <u>인터넷 대상민원</u>은 민원의 종류,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</p> <p>② <u>인터넷 민원접수</u>는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.</p> <p>제12조(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)</p>	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① <u>전자민원을---</u></p> <p>② <u>전자민원 창구는 전자민원---</u></p> <p>③ 현행과 같다</p> <p>④ <u>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</u>은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<u>전자민원 접수</u>)</p> <p>① <u>전자민원은 ---</u></p> <p>② <u>전자민원 접수</u>는---</p> 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①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한다.</p> <p>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고,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한다.</p> <p>제14조(전자우편 ID보급) ① 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고,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전자우편 ID보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다.</p> <p>제16조(개인정보보호) ① ~ ②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한다.</u></p>	<p>제16조(개인정보보호) ① ~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<u>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다</u>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<u>정할 수 있다</u></p>

충청북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·운영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활동의 소요 경비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1조 (목적), 제2조 (정의), 안 제3조 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
- 안 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, 안 제8조 (전자민원 창구 설치 운영)
- 안 제9조 (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)
- 안 제12조 (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)
- 안 제14조 (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사항), 제16조 (개인정보보호)
- 안 제18조 (시행규칙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연중

나. 추계 결과

-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2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
세 출	2,10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

6. 작성자 : 행정국 정보통신과 과장 유경수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	계	
세 입							
세 출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	
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	
재원 조달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지방세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